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43호 (2024-1)  
발행일 2024. 1. 8.  
ISSN 2092-7117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 한국의 교육복지사업 현황과 과제<sup>1)</sup>

나원희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환경의 악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학습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복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교육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복지사업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교육복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제시하는 교육복지 개념을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세부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교육복지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01. 교육복지의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간 학습 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이후 교내 무선망(와이파이) 구축, 스마트 기기 보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교육 격차는 좁혀지고 있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됨.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이 처한 환경과 사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가 일상에서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임. 특히 취약계층 학생에게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첩되면서 사회적 불리함이 더욱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시행 주체별 교육복지사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보고서인 나원희, 김민희, 류아현, 고제이, 이진이(2022),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지출 분석」(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교육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학습특별 지원,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확대 등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복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육복지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이 글에서는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온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리하여 명확히 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02. 교육복지 개념 정리

### ◆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에서의 교육복지 개념은 학자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교육복지 개념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괄하는가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됨. 광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 협의는 ‘교육소외계층’ 또는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 교육과 사회복지의 관계 속에서 개념을 찾기도 하는데, ① 교육의 모든 활동이 교육복지라고 보는 시각 ②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시각 ③ 교육을 사회복지의 한 구성 요소로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수단적 기능으로 보는 시각 등이 있음.
- 최근 연구에서는 상대적 교육 소외 및 교육 격차 해소와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 보장이라는 입장을 아우르는 현실적 필요주의 관점이 다수 나타남(이봉주, 우명숙, 2014; 엄문영 외, 2014).
  - 현실적 필요주의 관점에 따라, 사회복지와 구별되는 교육복지의 특징은 “학교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으로 규정됨.

〈표 1〉 국내외 선행연구에서의 교육복지 개념

구분		교육복지 개념
선행연구	국내	<p><b>1. 교육과 복지의 관계 분석을 통한 개념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내용 안에 복지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li> <li>-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간주</li> <li>- 교육 자체를 사회복지의 한 구성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li> </ul> <p><b>2. 대상에 따른 개념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협의)</li> <li>-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광의)</li> </ul> <p><b>3. 현실적 필요주의 관점에 따른 개념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연구에서는 현실적 필요주의 관점에 따라 교육복지를 개념화함</li> <li>- 교육복지와 사회복지를 구분하기 위해 교육복지 개념을 “학교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으로 규정함</li> </ul>

<b>선행 연구</b>	<b>해외</b>	<p><b>1. OECD 국제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없으며, 유사한 의미로 ‘형평성(equity)’이 있음</li> <li>-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사회적 배경, 출신,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장애, 학습 곤란,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은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함</li> <li>- 유아교육·보육, 성인 학습을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간주함</li> <li>- OECD의 교육비 조사는 교육기관 안(형식교육, 학교)에 집중하는 반면,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은 불리한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함</li> </ul> <p><b>2. 해외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프랑스는 교육복지와 사회복지를 구분함</li> <li>- 독일, 핀란드, 일본은 교육과 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복지정책 안에 교육정책을 포함함</li> </ul>
--------------	-----------	--

자료: 나원희, 김민희, 류아현, 고제이, 이진아. (2022).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지출 분석. pp. 21-52의 내용을 요약함.

◆ 관련 법령 검토

-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자 근거가 됨.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및 실현이라는 교육복지 이념을 담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동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실현의 책무’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음.
- 교육복지 관련 법제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음.
  -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일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음.
  - 교육복지법(안)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는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함.
  - 내용 측면에서도 서울시는 학생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 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등 ‘학교 틀 안’에서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함.

〈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의 교육복지 조례 비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및 제34조와 「교육기본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지원, 민간협력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나.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다.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라.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마.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바.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사.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아.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차.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  타.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7조(교육복지사업 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간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복지란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관련 주요한 민간협력사항의 협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진  3. 정책협의회 안건의 조정</p> <p>---이하 생략---</p>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 ◆ 교육복지 개념

- 최근 연구와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와 구별되는 교육복지의 특징은 ‘학교’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며, 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구분하는 대신 적절히 혼용하는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정의함.
  - OECD(2021) 교육비 조사에서도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위치(location)에 따라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을 구분함.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사회복지와 구분되는 교육복지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교육복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교육소외계층 또는 교육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충하는 것으로 정의됨. 이는 이봉주, 우명숙(2014), 엄문영 외(2014)가 현실적 필요주의적 관점에서 정의한 교육복지 개념과 같음.
  - 아동과 학생에 대한 보편적 복지 개념과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선별적 개념을 혼합한 것이며, 교육복지사업의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을 포괄함.
  - 교육복지의 대상으로는 유아·초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취학 전 아동, 저학력 성인까지를 모두 포괄함.

### 03. 교육복지사업 분석 기준 및 방법

#### ◆ 분석 방법 및 자료

- 중앙정부(열린재정, dBrain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365, e-호조시스템), 지방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알리미, K-edufine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2022년 예산서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함.
  -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교육복지사업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 정상 등교가 가능했던 2022년도 국회 확정 예산 자료를 활용함.
-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자료가 충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함.

〈표 3〉 교육복지사업 분석을 위한 분석 자료 결합(merge)

분석 자료			참고 자료
구분	자료 1(공시 데이터)	자료 2(예산서)	자료 3(사업별 설명 자료)
특징	세부 사업별 예산서	세세부사업별 예산 내역	세세부사업별 내용 및 대상, 사업 근거 제시
제공 형태	엑셀 파일	pdf 파일	pdf 파일
단점	세세부사업 내용 확인 불가	사업 내용 및 대상 파악 불가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 필요
자료원	열린재정	내부 자료	내부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교육청 개별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개별 홈페이지
	지방재정365	지자체 개별 홈페이지	지자체 개별 홈페이지

자료: 저자 작성.

#### ◆ 교육복지사업 선정 기준과 제외 영역

- 선정 기준으로는 유아동부터 성인까지를 포괄하고, 국민 기초교육 수준 보장(의무교육제도, 유아교육 기회 확대 등) 사업, 경제적·지역적 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방지 관련 사업,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을 포함함.

-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포함하며, 기초교육 수준 적용에서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기초학력 성취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함.
-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도시 저소득 지역 및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하며, 학교 부적응자 및 학업 중단자, 학교 밖 청소년, 귀국 학생,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교육복지사업 을 포함함.
- 제외 영역은 행정비용 성격의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증축, 노후 시설 개축·리모델링 사업, 시스템 구축·운영 등 정보화 사업,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및 기타임.

#### ◆ 교육복지사업 유형화

- ①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 따라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으로 구분하고 ② 선별적 지원(특정 조건 및 대상)과 보편적 지원을 구분하며 ③ 수혜 대상을 취학 전 아동부터 성인까지를 범위로 하여 구분함.<sup>2)</sup>
  - A 유형은 학교 안-선별 사업, B 유형은 학교 안-보편 사업으로 교육복지 영역이며, C 유형은 학교 밖-선별 사업, D 유형은 학교 밖-보편 사업으로 사회복지 영역임.
  - 단, OECD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sup>3)</sup> 조사의 정의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빚금 친 부분)는 교육복지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에도 해당함.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은 사회복지지출(SOCX) 조사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하며, OECD의 교육비(EAG: Education at A Glance) 조사에서는 영유아 교육 단계의 교육 영역에 포함함.

〈표 4〉 교육복지사업 분석들에 따른 유형화(A-B-C-D 유형)

구분	교육복지사업		수혜 대상	OECD 기준
	선별	보편		
학교 안 '교육기관 안'	A	B	성인	교육비 영역
			대학생	
	초중고 학생	취학 전 아동		
	취학 전 아동			
학교 밖 '교육기관 밖'	C	D	성인	사회복지지출(SOCX) 영역
			대학생	
	초중고 학생	취학 전 아동		
	취학 전 아동			

자료: 저자 작성.

.....

2) 보고서 원문에서는 네 가지 기준[①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 따라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으로 구분 ② 사업의 내용이 교육적(수업과 관련한 활동)인지 부가적(수업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인지를 구분 ③ 수혜 대상을 취학 전 아동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구분 ④ 선별적 지원(특정 조건 및 대상)인지 보편적 지원인지를 구분]에 따라 유형화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② 사업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부가적인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제외함.

3) OECD는 국가 간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OECD 사회복지지출(SOCX)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며,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s)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이나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급여(benefits) 또는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s)"으로 정의하고 있음.

## 04. 교육복지 현황 및 분석 결과

- 교육부의 교육복지사업은 주로 학교 안-선별 지원(A 유형)과 학교 안-보편지원(B 유형)에 집중되어 있음.
  - A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은 고등교육에 대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이며, B 유형 사업에는 유아교육바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해당됨.
  - 교육부의 학교 밖-선별 지원(C 유형)으로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과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음. 학교 밖-보편 지원(D 유형) 사업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음.
- 서울시교육청<sup>4)</sup>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육복지사업이 학교 안-보편 지원(B 유형) 사업인 것을 알 수 있음.
  - 학교 안-보편 지원(B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은 학교급식 운영의 무상급식 사업이며, 다음으로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지원 사업이 있음. 학교 안-선별 지원 사업으로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 등이 있음.
  -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은 학교 밖 지원(C, D 유형)에서도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 밖-보편 지원(D 유형)에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과서 지원, 취학 전(만 3~5세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사업, 방과후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학교 흡연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이 해당됨.
  - 학교 밖-선별 지원(C 유형)에는 대안교육 운영(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등),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방과후 보육 지원), 방송중고 성인 및 10대 학업 중단 학생 대상 방송통신중고 운영 지원, 장애 성인 평생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이 해당됨.
- 서울시는 교육복지사업에서 학교 밖-보편 지원(D유형)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분야 외에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므로 교육 분야를 주 담당으로 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수치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사업 중 80% 이상이 학교 밖-보편 지원(D 유형) 사업에 해당되며, 대부분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을방과후활동 사업, 학교 안팎 방과후학교 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선별 지원 사업보다 보편 지원 사업인 B 유형과 D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음. 학교 안-보편 지원(B 유형) 사업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이 있음.

4)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청(본청과 기초자치단체)을 중심으로 분석함. 이는 17개 시·도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세부사업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주어진 연구 기간 내에 정밀한 분석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재정의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 사업 설명 자료와 기본계획 등이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임.



〈표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유형별 교육복지사업 예시

구분	교육부	시도교육청(서울)	지방자치단체(서울)
<b>A 유형</b> (학교 안-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b>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 이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군이자 면제, 특별상환유예, 이차보전, 손실보전금),</li> <li>• <b>장애 학생 교육 지원</b>(장애아 교육 지원, 국립특수학교 학력 증진, 취약계층 학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급여 지원(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 학비 지원,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자무상교육비)</li> <li>• 교육복지우선지원</li> <li>• 학력 향상 지원</li> <li>• 방과후학교사업 지원</li> <li>• 초등돌봄교실</li> <li>•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li> <li>• 특수교육복지</li> <li>•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수급자 교육급여)</li> <li>• 장학금 지원</li> <li>• 장학기금</li> <li>• 장학생 선발 운영</li> <li>• 장학재단 운영 지원</li> <li>•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li> <li>•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운영</li> <li>• 구로형 위기학생 지원</li> </ul>
<b>B 유형</b> (학교 안-보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무상교육</li> <li>• 유아교육비</li> <li>• 보육료 지원</li> <li>• 교과서</li> <li>• 지도서 구입비 지원</li> <li>•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li> <li>•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li> <li>•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li> <li>•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li> <li>• 국립대학 시설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지원</li> <li>• 교과서 지원(초중등,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li> <li>• 만 3~5세아 유아학비</li> <li>• 학교급식 운영 지원</li> <li>• 무상급식</li> <li>• 학교보건 관리</li> <li>• 사립유치원 지원</li> <li>• 학생 안전 관리</li> <li>•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무상교육</li> <li>• 교육복지센터 운영</li> <li>• 입학 준비금 지원</li> <li>• 급식 지원</li> <li>•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li> <li>• 학교폭력 예방 사업</li> <li>• 학교보안관 운영</li> </ul>
<b>A, B 유형</b> 중 취학 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li> <li>•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유아교육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5세아 유아학비,</li> <li>• 만 3세 유아학비,</li> <li>• 방과후과정비,</li> <li>• 저소득층 유아학비,</li> <li>• 두런두런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유치원 급식 지원</li> </ul>
<b>C 유형</b> (학교 밖-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li> <li>•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검정고시제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li> <li>• 평생교육바우처 지원</li> <li>•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 운영</li> <li>• 평생교육 운영(검정고시, 방송중고 운영 시도분담금, 평생교육시설)</li> <li>•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li> <li>• 장애 성인 평생교육</li> <li>• 다문화 학생 지원</li> <li>• 학교보건 관리(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이주 학생 의료비 지원, 위기학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림스타트 사업</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운영)</li> <li>•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li> <li>•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li> <li>•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li> <li>•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li> </ul>
<b>D 유형</b> (학교 밖-보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li> <li>•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li> <li>•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지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과서)</li> <li>• 혁신교육지구 운영</li> <li>• 누리과정(만 3~5세아 보육료)</li> <li>• 방과후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li> <li>• 학교 흡연 예방 교육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li> <li>•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사업</li> <li>• 학교 인팍 방과후학교 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li> <li>•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운영 등 만 0~2세 보육료</li> <li>• 영유아 보육료 지원</li> <li>• 방과후 보육료</li> <li>•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li> </ul>

주: 노란색 블록 처리 한 부분은 사회복지지출(SOCX) 영역에 해당함.

자료: 저자 작성.



## 05. 결론 및 제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청소년의 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복지사업 이외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제도가 시의성 있게 시행되어야 함.
  - 분석 결과, 교육부 사업은 대부분 ‘학교 안’ 교육복지사업이었으며,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보편적 지원(B 유형), 고등교육(대학)에는 선별적 지원(A 유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도교육청 역시 ‘학교 안’ 교육복지사업이 많았으며, 특히 무상급식사업 등과 같은 보편적 지원(B 유형)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학교 밖-보편 지원(D 유형)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것을 확인함.
  -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학교 밖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사업(예를 들어 성인 대상 대안교육, 문자해득교육 등)인 C 유형은 중앙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지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밖-선별 지원(C 유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정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다만, 교육복지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복지사업의 프로그램 체계가 상이하여, 분석 과정이 매우 복잡하였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체계에서는 청소년 사업이 노인·청소년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인과 청소년 각각에 대한 돌봄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혜 대상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수혜 대상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불명확성은 재정정책 모니터링을 방해하고, 수혜자에 대한 중복 지원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고경환, 이기호, 이혜정, 최영준, 진재현, 한솔희, 정영애. (2019).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2018(잠정).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 정영철, 고경환, 노대명, 이현주, 박세경, 신정우, 신화연, 오욱찬, 고혜진, 하솔잎, 안영, 최영준, 양미선, 원도연. (2020).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제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기본법, 법률 제18456호 (2022).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내부 자료). 교육부.
- 김민희. (2022). 지방교육재정의 미래. 제주도교육청 발표자료.
- 나원희. (2020).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서울: 한국재정정보원.
- 나원희, 김민희, 류아현, 고제이, 이진이. (2022).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지출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687호 (201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594호 (2023).
- 엄문영, 이선호, 김혜자, 김민희, 오범호, 윤홍주. (2014). 교육복지투자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봉주, 우명숙. (2014). 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3(4), 75-104.
- 장덕호, 김성기, 유기웅, 최경일. (2020). 교육복지론. 박영스토리.
-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22. 10. 11. 인출.
- 대학재정알리미. <https://uniarlimi.kasfo.or.kr>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s://www.sen.go.kr/>
-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eduinfo.go.kr/portal/main.do>
-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집필 나원희(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498